



교육감 규정

번호: A-831

제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항목: 학생

발행: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2일자 규정 A-831을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학교 차원의 대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대한 고발, 조사 및 해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변경내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및 보복에 관한 뉴욕시 교육청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섹션 I)

- 성폭력이 교육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학교 외 장소에서도 금지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섹션 I.B)
-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 또는 조사 협조로 인한 개인간의 부정적 행동은 보복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한다. 보복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에 처해진다. (섹션 I.C)
- 성폭력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 또는 일련의 연관된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섹션 I.D)
-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폭력을 정의하고 소셜미디어, 블로그, 채팅방 및 게임 시스템을 포함하는 온라인 성폭력의 예를 제시한다. (섹션 I.E)
- 성폭력 행위의 예를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말 하는 것,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토킹, 성적 의도를 갖고 바라보거나 유혹하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로 확장한다. (섹션 I.F)
- 뜻을 정의하는 섹션을 삭제한다.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고(report)”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타인(예, 교직원, 부모 및 기타 학생)이 학생 대 학생 성폭력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섹션 II.A)

- 각 학교장은 최소 일(1)명의 교직원을 성폭력 방지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를 접수할 책임을 부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상의할 책임자로 정할 것을 명확히 한다. 성폭력 방지 담당관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행정가, 수퍼바이저,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심리상담사나 소셜워커로서 해당 학교 풀타임 직원이어야 한다. (섹션 II.B)
- 성폭력 방지 담당관은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성폭력 방지 담당관이 사직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책임지고 새로운 성폭력 방지 담당관을 임명하고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해당 담당관이 공석인 기간 동안, 학교장은 즉시 임시 성폭력 방지 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섹션 II.B.1)
- 해당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폭력 방지 담당관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성폭력 방지 담당관이 복직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임시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섹션 II.B.2)
-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을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나 아는 바가 있거나,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누구든 막론하고 즉시 해당 사안을 일(1) 수업일 이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를 한지 이(2) 수업일 이내에 문서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종이로 된 신고 양식이 언제든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섹션 II.C)
- 신고 양식 첨부 문서의 하이퍼링크/url 을 대체하고 불만/신고양식을 개정한다. (섹션 II.C 및 D)
-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는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불만/신고 양식 제출, 학교장/대리인이나 성폭력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신고, 또는 온라인 포털을 이용한 신고를 모두 포함한다. 온라인 포털 하이퍼링크/url 또한 추가한다. (섹션 II.D)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 개인 누구든 익명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익명의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조사가 실시될 것이란 사실을 추가한다. (섹션 II.G)
- 성폭력 방지 담당관은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모든 내용을 학교장/대리인에게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섹션 II.H)
- 모든 문서상의 신고서(예, 이메일, 불만/신고 양식을 이용한 신고)는 반드시 학교 조사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섹션 II.I)
- 모든 성폭력 신고는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nline Occurrence Reporting System:OORS)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지 일(1) 수업일 이내에 입력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한다. (섹션 II.J)
-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성폭력 의심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신고접수 즉시 이행되어야 하나, 학교장/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한지 이(2)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섹션 II.K)

-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이러한 통지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학교장/대리인에게 표명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사생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부모(들)에게 통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학교장/대리인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시니어 현장 자문(Senior Field Counsel)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섹션 II.K)
- 신고된 위반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하고, 시니어 현장 자문 및/또는 보로/뉴욕시 오피스의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섹션 II.L)
- 신고 내용(들)의 성격과 심각도상 학교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교육청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섹션 II.M)
-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 오(5) 수업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섹션 III.A)
- 학교장/대리인이 조사를 실시할 때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은 반드시 별도로 면담해야 하며, 모든 면담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각 면담의 날짜도 기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III.A)
- 조사의 일환으로 관련 증거(예,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입수해야 하며,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룰 방법에 관해서는 지침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로 안전 디렉터 및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섹션 III.A.6)
- 조사를 종결지을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우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이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섹션 III.B)
-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신고된 내용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섹션 III.C)
- 본 규정 위반이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의 예로서, 해당 행위가 의심 피해자의 교육,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정신 및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표명되었는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섹션 III.C)
- 조사를 종결 지을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에 입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행동이 본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십(10) 수업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 사본을 반드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 보로/뉴욕시 오피스의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보내야 한다. (섹션 III.D)
-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지 십(10) 수업일 이내에 관련 학생의 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신고 내용 입증 여부 및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결정된 결과를 통보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III.E)

- 조사 이전 또는 조사 중 언제라도 조사 종결 이전에 중재와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섹션 III.G)
- 적절한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과 증인에게 중재 및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섹션 IV.B)
- 중재 및 지원의 추가 예로서 의료서비스 의뢰, 학업 지원 및 조정(예, 수업이나 런치/쉬는 시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변경 등), 개인 지원 계획 작성, 교육감 규정에 의거한 안전 전학 등을 포함한다. (섹션 IV.B)
- 한 학년도 동안 두 차례 이상 입증된 성폭력 피해자가 된 학생, 그리고 한 학년도 동안 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것이 요구됨을 규정한다. (섹션 IV.B)
- 조사가 종결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피해자 및 가해 학생, 증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경우 중재 및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다. 이러한 중재 및 지원은 각 케이스 별로 판단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니터 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섹션 IV.B)
-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 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한 훈육 조치에 취해질 것을 명확히 한다. (섹션 IV.D)
- 학교장/대리인은 OORS 를 이용하여 정학 및 공청회 담당실 온라인 시스템에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에게 제공된 중재와 지원 내용, 그리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취해진 모든 훈육 조치를 입력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IV.E)
- 섹션 제목에 “방지”라는 단어 추가. (섹션 V)
- 하이퍼링크/url 이 있는 샘플 공지문의 첨부 문서를 제거하고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에서 마련한 문서로 대체. (섹션 V.A)
- 하이퍼링크/url 이 있는 첨부 브로셔를 개정하고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에서 마련한 문서로 대체. 학년도 중에 입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등록과 동시에 해당 문서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섹션 V.B)
- 본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동에 중재나 갈등 해결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중재 조치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고, 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101 및 A-449 를 참고하여 중재와 지원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고, 전학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섹션 IV.B)
- 성폭력 방지 담당관 성명 및 연락처 정보가 학교 웹사이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한다. (섹션 V.C)
- 비교직 학교 직원들에게도 본 규정에 관한 정보 및 연수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섹션 V.D)
- 각 학교 교장은 성적 괴롭힘(성폭력 포함)파악 및 예방, 반차별 정책과 관련법, 불만처리 절차 및 각 관련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규정한다. (섹션 V.E)

- 각 학교 교장은 반드시 학교장이 지정한 인물이 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방지 담당관이 성적 괴롭힘 및 차별 파악 및 예방에 관한 연수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을 규정한다. (섹션 V.E)
-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반드시 성폭력 방지 담당관(들)의 성명(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VI.A)
-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본 규정이 비교직 직원들과도 논의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VI.B)
-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반드시 학교장, 성폭력 방지 담당관 및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개인들이 관련 연수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VI.C)
-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 가해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함을 규정한다. (섹션 VII)
-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외부 불만 신고서 접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섹션 VIII)
- 뉴욕시 교육청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연락처 정보 및 타이틀 IX 하이퍼링크/url 을 추가한다. (섹션 IX)
- 관련 부서 명칭을 갱신한다.

번호: A-831

제목: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항목: 학생

발행: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개요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학생 대 학생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은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DOE가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다음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규정에 관한 연수를 받고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접수할 성폭력 방지 담당관의 지정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신고, 조사, 통지 및 추후 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에 가담한 학생은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품행 기대치(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적절한 중재와 지원,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및 증인들은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 대 학생 차별 행위(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및 성 지향에 따른 차별 포함), 괴롭힘, 도발 및/또는 따돌림에 관한 신고는 교육감 규정 A-832을 참고하십시오.

I. 정책

- A. DOE는 학생 대 학생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심각하고 만연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본 규정 위반입니다: (1)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가하거나 이로부터 혜택을 입는 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의 교육 자체에 방해가 됨; 또는 (2)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함; 또는 (3)기타 학생의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B. 성적 괴롭힘은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이것은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확실히 방해할 위험이 있거나, 학교 공동체의 보건, 건강,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확실히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학교, 학교 수업시간, 학교 방과 전 및 후, 학교 건물 내, 학교 후원 행사 또는 DOE 가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은 물론 학교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 C.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해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학생이나 부모, 또는 DOE 직원에 대한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DOE 정책입니다. 보호된 활동 참여로 인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보복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 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 D.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원치 않는 행위 및/또는 성적인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루된 모든 학생들의 성별, 성 정체성, 성 취향 또는 성지향에 관계 없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 또는 일련의 연관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 E.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으로, 또는 글이나 전자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괴롭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이메일, 개별 디지털 지원 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
- F. 성적 괴롭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 행위를 하거나 호의를 봐주도록 압력을 넣거나 요구하는 것;
 - 성적으로 폭력이나 강압적 행동(예, 공격, 강간)에 가담, 또는 어떤 사람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압하는 것;
 - 다른 사람의 신체나 옷을 만지는 것, 쓰다듬기, 키스, 꼬집기, 짹짹, 또는 손으로 쓸고 지나가기 등의 성적인 성격의 신체 행위에 가담하는 것;
 - 성적인 말, 비유, 의견, 모욕, 위협, 놀리기 및/또는 농담을 하거나 성에 관해 원치 않는 질문을 하는 것;
 -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해 말이나 글, 또는 그림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
 - 외설적인 몸짓을 취하는 것;
 -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는 것. 테크놀로지 사용을 이용한 스토킹 포함;
 - 결눈질 하기, 성적으로 추근대기, 또는 구애;
 -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성적이거나 외설적인 형상, 사진,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을 허가 없이 기록, 게시, 전시 및/또는 배포하는 것;
- 현재 데이트 상대나 앞으로 가능성 있는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위협 또는 실질적인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위(데이트 성폭력);

II. 신고 절차

- A.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고(report)”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타인(예, 교직원, 부모 및 기타 학생)이 학생 대 학생 성폭력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B. 각 학교 교장은 반드시 최소 일(1)명의 교직원을 성폭력 방지 (SHP)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신고를 접수할 책임을 부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상의할 책임자로 정해야 합니다. SHP 담당관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행정가, 수퍼바이저,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학교 심리상담사나 소셜워커로서 해당 학교 풀타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1. 어느 경우에도 학교에는 반드시 섹션 V.D 에 명시된 연수를 받은 SHP 담당관을 두어야 합니다. SHP 담당관이 사직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책임지고 새로운 SHP 담당관을 임명하고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장은 즉시 임시 SHP 연락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2. 해당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SHP 담당관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SHP 담당관이 복직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임시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C. 학생 대 학생 성폭력을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나 아는 바가 있거나,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누구든 막론하고 즉시 해당 사안을 일(1) 수업일 이내에 SHP 담당관이나 학교장/대리인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 보고를 한지 이(2) 수업일 이내에 [불만/신고 양식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reporting-form.pdf?sfvrsn=43ca449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reporting-form.pdf?sfvrsn=43ca449)에 있음)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종이로 된 신고 양식이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D.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외의 기타 개인도 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해 SHP 담당관이나 학교장/대리인, 또는 어떤 교직원이나 말이나 문서(불만/신고 양식 포함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reporting-form.pdf?sfvrsn=43ca449> 에 있음)로 신고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 포털(<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 다른 학생에 의해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또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학생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F. 학교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OSYD)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가 보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본 규정서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학생/학부모가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으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또는 보고 자체가 꺼려지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OSYD 에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 G.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 개인 누구든 익명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익명의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사가 실시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H. SHP 담당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학교장/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I.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문서상의 신고서(예, 이메일, 불만/신고 양식-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831-reporting-form.pdf?sfvrsn=43ca449> 에 있음)를 반드시 학교 조사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J.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신고 내용을 접수한지 일(1) 수업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OORS)에 입력하고 즉시 섹션 III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K. 학교장/대리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성폭력 의심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는 신고접수 즉시 이행되어야 하나, 학교장/대리인이 신고를 접수한지 이(2)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학교장/대리인에게 표명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사생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학부모(들)에게 통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시니어 현장 자문(Senior Field Counsel)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L. 학교장/지명 담당자가 차별로 인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이 의심되는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시니어 현장 자문 및/또는 보로/뉴욕시 오피스의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M. 신고 내용(들)의 성격과 심각도상 학교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DOE 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III. 조사

- A. 모든 신고 내용은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은 반드시 별도로 면담해야 하며, 모든 면담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각 면담의 날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조사 단계 착수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으며, 신고가 접수된지 오(5) 수업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1. 의심 피해자 면담;
 2. 의심 피해자에게 자세한 피해 내용의 설명을 포함한 가능한 상세한 내용,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목격자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3. 의심 가해 학생을 면담하고 신고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조언;
 4. 고발당한 학생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청;
 5. 목격자가 있다면 면담하고 이들의 서면 진술 입수;
 6. 관련 증거 입수(예, 사진(들), 해당되는 경우 감시 카메라 또는 오디오 녹음). 학교장/대리인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뤄야 할 때 DOE 지침에 따르고, 필요하다면 보로 안전 디렉터 및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 B. 조사가 종결되면,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신고된 내용이 우세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 모든 증거 - 관련자 및 증인들의 신뢰도와 이들이 제시한 증거의 퀄리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고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C. 신고 내용이 입증되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위반 행위를 둘러싼 총체적은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 당사자 학생들의 나이;
 - 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범위;
 -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행위가 공격적이었는지 여부;
 -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였는지 여부;
 - 행위의 빈도 및 지속 기간;
 -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수;
 -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 행위가 발생한 장소;
 - 동일한 학생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육(출석, 학업 수행도 또는 특별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행위가 피해자의 교내 행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웰빙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D. 학교장/대리인은 조사가 종결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OORS 에 입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신고된 행동이 본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 이러한 정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학생 대 학생 성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십(10)수업일 이내에 OORS 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OORS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 보로/뉴욕시 오피스의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보내야 합니다.
- E.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의심 피해자의 부모(들)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신고 내용 입증 여부 및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위반인지 판단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하나라도 입증된 경우, 이러한 통지문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 및 후속 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자녀에게 중재나 지원이 지원될 수 있는지 의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은 한, 학부모들은 신고 접수 십(10)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문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II.K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이러한 부모들에게는 본문단에 명시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 F. 섹션 III.E 에 명시된 정보는 학생 기록 정보 비밀 보호에 관한 주 및 연방법에 의거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는 피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가해자와 관련된 후속 조치, 중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G. 조사 전이나 조사 중의 어느 때라도 학교장/대리인이 학생(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 포함)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생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섹션 IV.B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고 모니터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V. 후속 조치

- A. 학교장/지명자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조사가 종결되고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섹션 III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가해 학생, 증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경우 중재 및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및 지원은 각 케이스 별로 판단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모니터 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재와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교내 또는 학교 밖의 의료 서비스 의뢰;
 - 학교 소셜워커, 가이던스 카운슬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 적절한 교직원에게 의뢰, 또는 지역사회기관에 카운셀링이나 지원 및/또는 교육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의뢰;
 - 학업 지원 및 조정(예, 수업, 런치/쉬는 시간, 방과 후 프로그램 스케줄 변경);
 - 개별 지원 계획 작성(한 학년도 동안 두 차례 이상 입증된 성폭력 피해자가 된 학생 및/또는 한 학년도 동안 본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

지원 및 중재에 관한 추가 정보는 훈육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재나 분쟁 해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전학이 적절한 조치일 경우, 전학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은 교육감 규정 A-101 및 A-449 참고).

- C. 학생이 자신의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위협 또는 실질적인 신체적, 성적 및/또는 정신적 학대의 패턴을 보일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하여 카운셀링과 지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D.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훈육 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한 훈육 조치에 취해야 합니다.
- E.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모든 관련자 및 증인들에게 시행된 중재 및 지원과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에게 내려진 모든 처벌 내용을 OORS 를 이용하여 정학 및 공청회 담당실 온라인 시스템(SOHO)에 입력해야 합니다.

V. 중재, 통지 및 연수

- A. 학교에서는 OSYD 에서 마련한 공고문(학생 대 학생 성폭력에 관한 DOE 정책 설명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 에 있음)을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는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도록 지정된 SHP 담당관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교내 어느 곳에서 본 규정 및 신고 양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지해야 합니다.
- B. 각 학교는 반드시 모든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OSYD 에서 마련한 자료 (신고 방법을 포함하여 본 규정에 나온 절차 및 정책 설명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respect-for-all-handouts> 에 있음)를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년도 중에 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학생에게도 반드시 등록 시점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모든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SHP 담당관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학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최소 연 1 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정 통신문 등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D. 각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매학년도 10 월 31 일 이전 본 규정서에서 명시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학생 및 교직원(비교직 직원 포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E.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성적 괴롭힘(성폭력 포함)과 약 및 예방, 반차별 정책과 관련법, 불만처리 절차 및 각 관련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까지 섹션 III 에 명시된 조사를 실시하도록 임명된 사람 역시 이러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F. 각 학교장은 반드시 섹션 V.D 에 규정된 연수 외에도, SHP 담당관이 OSYD 에서 규정한 필수 SHP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G. 본 규정서의 사본은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VI.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

각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 10 월 31 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SHP 담당관(들)의 성명(들).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갱신하십시오.

- B. 본 규정서에 소개된 정책 및 절차가 학생 및 교직원(비교직 포함)들과 논의 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 C. 학교장과 SHP 담당관, 섹션 III 에 규정된 조사 담당자 등이 본 규정서에서 의무로 지정한 연수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날짜 기입.

VII. 비밀보장

모든 관련자 및 신고 관련 모든 증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DOE 정책입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 공정 절차 제공 및/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 또는 법으로 규정한 바, 또는 학생의 안전이나 웰빙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VIII. 대안 신고 절차

이러한 내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외부 기관에 혐의 제기 등의 기타 해결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민권담당실(Office for Civil Rights)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전화:

(646) 428-3800

팩스: (646) 428-3843

OCR.NewYork@ed.gov

<http://www.ed.gov/ocr>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 연락처: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 374-6807

팩스: (212) 374-5751

RespectForAll@schools.nyc.gov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전화: (718) 935-4987